

영등포구의회
제16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
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9. 19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
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3호로 2011년 9월 0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1. 6.30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확대와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·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(안 제12조)

-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(기존 500미터)

- 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※ 유효기간 : 2015.11.23일까지 유효(기존 '13.11.23까지)
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제1항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1. 6. 30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범위를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 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또한 같은 조항 후단에 “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 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” 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.
-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기존 3년인 2013.11.23에서 5년인 2015. 11. 23일 까지로 연장함.
-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에 의결된 조례에 의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인 현행 500미터 이내는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짐.
-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신설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짐.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짐.
-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일부 개정한 것이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개정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유통산업발전법

제13조의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칙

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,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제8조제2항·제3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.

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

① 구청장은 00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자치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자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2.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(이하“전통상점가”라 한다.)

3

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및 범위

아래 전통시장 16개소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까지를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.

연번	전통시장명	소재지	비고
1	신길시장	영등포구 신길2동 221-1번지 일대	
2	영신상가	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일대	
3	삼구시장	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9번지 일대	
4	동남상가	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4번지	
5	영등포유통상가	영등포구 당산동2가 30-2번지	
6	도림시장	영등포구 도림동 176번지 일대	
7	영일시장	영등포구 문래동3가 10번지	
8	양남시장	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	
9	영등포기계상가	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번지	
10	대신시장	영등포구 신길동 116-15번지	
11	신동시장	영등포구 신길동 259-4번지 일대	
12	사려가시장	영등포구 신길동 254-1번지 일대	
13	신영사려가시장	영등포구 신길동 255-9번지 일대	
14	대림시장	영등포구 대림동 963-5번지 일대	
15	대림중앙시장	영등포구 대림동 1075-47번지 일대	
16	두암종합시장	영등포구 대림동 717번지	